

유전스。시스템과 앞으로의 金利推移

趙 春來

(韓國銀行·外換受給課長)

1. 머리말

유전스輸入이란 輸入業者가 国内外換銀行의 支給保証(usance L/C 開設)을 바탕으로 해외로 부터 信用을 供与받아 물품을 輸入하고, 一定期間 후에 同 輸入代金과 信用供与期間의 利子를 決済하는 방식의 輸入을 말하며, 外國換銀行이 支給保証을 한다는 点에서 D/A輸入과 区分된다. 이는 또한 信用供与者에 따라 外國金融機關이 信用을 供与하는 Banker's usance와 輸出商이 직접 信用을 供与하는 Shipper's usance로 구분된다.

유전스輸入은 一定期間 輸入代金決済를 猶豫하게 되므로 輸入業者は 輸入物品의 販売代金을 회수하여 同 代金을 決済할 수 있어 原資材輸入에 따른 資金負担을 排除할 수 있으며, 輸出業者 역시 輸出代金과 信用供与期間의 利子에 대하여 公信力이 높은 金融機關이 支給保証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輸出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유전스 輸入은 輸入業者の 資金負担輕減과 輸出業者の 債權의 安全確保라는 利点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國際的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스輸入을 완전 自由化할 경우, 不必要한 輸入需要를 유발하게 되고 過度한 貿易 信用導入를 招致하게 되는등 一國의 國際收支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적절한 規制를 加하고 있는 것이一般的인 바, 우리 나라도 主要原資材등에 限해서만 이를 許容하는 등 直接 間接으로 규제를 하여왔다.

한편 유전스輸入은 輸入代金 決済猶豫에 따른 輸入業者の 資金負担 輕減效果가 있는 反面, 信用受惠에 따른 資金 코스트를 負担하여야 되기 때문에 对内外資金調達 코스트의 变動 즉, 国内 「원」

貨資金 調達金利와 유전스信用供与金利의 变動에 따라 同 方式에 의한 輸入選好度는 크게 左右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变動換率制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換率變動幅도 큰 变数로 작용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전스 管理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延支給수입실적動向 및 对内外金利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유전스輸入管理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스輸入은 輸入代金決済猶豫를 통한 輸入業者の 資金負担 輕減效果가 있기 때문에 이를 適切히 規制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輸入輸要를 유발하게 되고, 過度한 短期資本導入을 초래하게 되는등 國際收支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輸入依存度가 높고, 과거와 같이 国內金利水準이 对外金利에 比해 相對的으로 높은 경우에는 同 方式에 의한 輸入選好現象이 발생하여 이를 適切히 規制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스輸入뿐만 아니라 D/A 輸入을 포함한 延支給輸入을 管理對象으로 하여 왔는 바, 75年 2月 그간 延支給輸入과 관련된 財務部長官의 각종 通牒을 통합·整備하여 「延支給輸入運用要領」을 制定, 시행하면서부터 종합적인 管理体制를 갖추게 되었다. 76年 6月에는 同 内容이 外國管理規程에 흡수되었으며, 그후 数次의 改正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延支給輸入管理의 내용을 보면, 對象品目에 대한 規制와 延支給期間에 대한 規制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延支給輸入對象品目은 輸出用原資材와 原油, 原

綿原木을 비롯한 主要原資材 등 別途 指定品目으로 크게 区分하고, 그때 그때의 對内外經濟与件을 감안하여 指定品目을 拡大 또는 축소조정하는 방식으로 管理하여 왔었다. 그러나 政府는 世界的인 外換自由化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今年 2月 이와 같은 포지티브方式 (positive list system)에 의한 指定告示制를 廢止하고, 實行関稅率 20% 以内인 모든 品目에 대하여는 原則的으로 延支給 輸入을 許容키로 하는 네가티브方式 (negative list system)으로 転換하였다.

한편, 延支給期間에 있어서는 上記「延支給輸入運用要領」制定當時의 경우, 유전스方式과 D/A方式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 등으로 区分하고, 이에 따라 許用期間을 각각 다르게 制限하여 왔으나, 76年 6月에 와서는 이와 같은 差等規制를 지양하고, 一律의 180日以内의 기간으로 調整하였으며, 다만 美国商品信用公社 (C. C. 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信用供与로 輸入하는 特定品目에 대하여만 同 資金의 特수성을 감안하여 180日을 超過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上記 延支給輸入期間은 國際收支事情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었다. 77年에는 海外建設用役 収入의 급격한 增加로 國際收支사정은 好転되었으나,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이 問題 point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短期貿易信用導入를 抑制하기 위하여 同年 9月에는 종전의 180日以内인 延支給 輸入期間을 150日以内로, 同年 11月에는 다시 120日以内로, 同年 12月에는 또다시 90日以内로 각각 短縮하였으며, 특히 日本, 台灣 등 標準航海日數 10日以下인 地域으로 부터의 輸入에 대하여는 60日以内로 크게 短縮하였다.

그러나 79年에 들어 第2次 石油波動을 비롯한 國際原資材価格暴騰과 世界경기침체現象으로 國際收支가 크게 悪化됨을 契機로 貿易信用 등 短期資本導入의 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延支給수입기간이 다시 延長되었는 바, 同年 8月에는 종전에 90日以内이던 延支給수입기간이 120日以内로, 同年 12月에는 다시 180日以内로 각각 延長되었다.

또한 延支給輸入에 대하여는 對象品目과 延支給期間에 대한 規制이외에도 金利條件規制와 輸入担保金적립義務賦課 등을 하여 왔었으나, 現在 이들 制限은 모두 解除되었다.

金利條件에 있어서는 最高金利인 基準金利를 정하여 이를 수시로 調整¹⁾하여 왔으나, 78年 4月에 와서 廢止²⁾된 바 있으며, 品目에 따라 5~20%를 積立토록 되어있던 輸入担保金적립의무도 금년 2月부터 免除되었다.

註 1) 延支給期間 6個月未滿인 경우 : 3個月滿期 LIBO
또는 美國 Prime rate + 0.625~1.5%
2) D/A輸入의 경우는 80年1月19일에 廢止

3. 延支給輸入実績

우리나라는 原資材의 對外依存度가 높고 主要原資材 위주로 延支給輸入을 許容하여 왔기 때문에 과거 延支給輸入은 原油·原綿·原木등 主要原資材가 대중을 이루어 왔으며, 延支給輸入期間調整 등 政府의 延支給輸入政策에도 큰 영향을 받아 왔는 바, 이는 대부분 決済期間 1年以内의 短期 유전스方式에 의해 이루어졌다.

78年 中에는 國際原資材価格의 安定 및 77年 下半期 以後의 延支給수입기간 短縮 등 延支給수입역제政策에 힘입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延支給輸入比重이 30%以下까지 低下되었으나, 79年 以後 第2次 石油波動을 비롯한 國際原資材価格暴騰과 延支給輸入期間 연장조치 등으로 延支給輸入比重이 급격히 높아져 總輸入의 40~50%를 占有하게 되었다.

(单位: 百万「달러」)

	1978	1979	1980	1981
A. 總輸入	12,433.5	16,869.2	19,170.4	21,526.9
B. 原資材輸入	8,024.2	11,260.2	14,171.8	15,342.6
C. 延支給輸入	3,635.9	6,893.4	10,116.7	10,093.8
原資材輸入比重(B/A, %)	64.5	66.8	73.9	71.3
延支給輸入比重(C/A, %)	29.2	40.9	52.8	46.9
유전스輸入 / 延支給輸入 (%)	97.4	97.2	97.6	97.9
短期延支給輸入 / 延支給輸入 (%)	90.8	95.6	96.6	96.6

가. 主要品目別 動向

延支給수입 실적을 主要品目別로 보면, 原油·原綿·原木등 주요원자재와 糜穀이 全體의 70%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单一品目으로서는 原油가 전체의 40~50%의 높은 占有率을 보이고 있다.

또한 延支給輸入이용율을 보면, 79年 以後 40~

□ 特輯：原油導入과 유전스

50%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는 바, 이를 品目別로 보면, 原油(76~98%) 原綿(70~97%) 糧穀(60 ~ 92%)등이 輸入의 대부분을 延支給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餘他 주요원자재도 總輸入의 50%以上을 延支給方式으로 輸入하고 있는 実情이다.

이들 品目中 原油와 糧穀의 경우를 보면, 延支給輸入依存率이 低下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原油의 경우에는 大韓石油公社가 쿠웨이트產 原油를 全量送金方式으로 도입하는등 原油輸入方式이 多樣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糧穀의 경우에는 一覽拂方式에 의한 米穀輸入이 급격히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反面 石炭의 延支給輸入은 顯著히 增加하는 추세를 보였는 바, 이는 國內需給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輸入急增에 基因한 것이다. ↗

나. 決済期間別 動向

延支給輸入実績을 決済期間別로 살펴보면, 短期延支給輸入의 경우에는 政府의 延支給輸入期間調整에 따라 決済期間別実績이 크게 变하여 왔으나, 長期延支給輸入에 있어서는 大部分 美國商品信用公社(C. C. C)의 信用供与로 도입되는 관계상 年 3億「달러」線의 一定水準을 유지해 왔다.

78年에는 主要原資材의 延支給輸入期間을 90日以内로 制限하였기 때문에 60日超過 90日以内의 延支給輸入이 전체의 約 60%를 占有하여主流를 이루어 왔으나, 79年 下半期 2次에 걸친 延支給수입기간 延長措置로 最長 180日까지 許容하게 됨에 따라 延支給期間이 점차 長期化하여 81年에는 120日超過 180日以内의 延支給輸入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게 되었다.

決済期間別 延支給輸入実績 推移

(单位：百万「달러」)

	總延支給輸入	60日以内	60日超過 90日以内	90日超過 120日以内	120日超過 180日以内	180超過 1年以内	1年超過
1978	3,635.9 (100.0)	416.3 (11.4)	2,172.5 (59.8)	283.3 (7.8)	318.1 (8.7)	112.2 (3.1)	335.5 (9.2)
1979	6,893.4 (100.0)	2,078.3 (30.1)	2,287.2 (33.2)	1,667.8 (24.2)	292.2 (4.2)	266.0 (3.9)	301.9 (4.4)
1980	10,116.7 (100.0)	1,748.3 (17.3)	1,877.9 (18.6)	1,776.0 (17.5)	3,993.7 (39.5)	377.8 (3.7)	343.0 (3.4)
1981	10,096.8 (100.0)	1,256.5 (12.4)	1,052.0 (10.4)	754.5 (7.5)	6,263.7 (62.0)	429.2 (4.3)	340.9 (3.4)

註 1) ()내는 構成比(%)임

2) 1978~1980 : 國內輸入 Usance包含 (期間에 관계없이 60日以内에 包含)

1981 : 國內輸入 Usance 除外

4. 유전스輸入과 對內外金利와의關係

輸入業者が 自體資金이 부족하여 信用을 供与받아 물품을 輸入하는 방법에는 國內信用을 이용하는 方法과 海外信用을 利用하는 方法이 있다. 즉, 國內에서 「원」貨資金을 조달하여 一覽拂條件으로 物品을 輸入하고 一定期間後 「원」貨措入金을 상환하는 方式과 海外로 부터 직접 信用을 供与받아 延支給(Usance, D/A)方式으로 物品을 輸入하고 一定期間後 輸入代金을 決済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어느方法을 指하더라도 輸入業者 信用受惠에 따른 資金コスト를 負担하여야 한다. 따라서 輸入業者が 이중 어느 방법을 指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 各 方法의 資金コスト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國內資金調達事情이 원활하고 國內資金調達コスト가 對外信用コスト에 비해 相對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원」貨資金을 조달하여 物品을 輸入하게 되고, 反対로 國내資金調達이 어렵거나 國내資金

延支給輸入対象品目 期間変遷状況

	75. 2. 14 ¹⁾ 360日以内	75. 7. 18 360日以内	76. 6. 3 360日以内	77. 8. 8 360日以内	77. 9. 15 360日以内	77. 9. 15 360日以内	77. 12. 31 360日以内	79. 8. 1 180日以内	79. 12. 27 180日以内	81. 7. 21 180日以内	82. 2. 1 180日以内
1. 輸出用原資材											
2. 別途指定品目 ²⁾	① D/A 360日以内	② Shippers Usance 以内 180日以内	③ Banker's Usance ; 180日以内								
3. 保税区域 또는 항 空機(船)내에서(出 人국者에 販売하기) 위한 物品											
4. c.c.c. 信用供与 豆 输入하는 品目	180日 超過 360日 以内 小麦, 玉米, 大豆										
5. c.c.c 信用供与 豆 输入하는 品目											

期間延縮：
180日 以内

期間延縮：
150日 以内

期間延縮：
120日 以内

期間延縮：
90日以内
(た, 標準航海
日數 10日 以
下地域은 30日
以内)

期間延長：
120日 以内

期間延長：
180日 以内
(標準航海日
數 10日 以
下地域은 90日
以内)

品目追加：
180日以内

品目追加：牛脂

品目追加： 청소
輸出用原資材인 原綿

品目削除：
楮, 大麦

2. 180日延定³⁾
方或亥單⁴⁾
(Positive⁵⁾ ↗
Negative⁶⁾ ↘)

註 1) 「延支給輸入運用要領」制定當時

2) 1977年 5月 以後에는 商工部長官이 每分期別至 財務部長官과 合意하여 定하여 줌.

3) 許容品目 : ① 實行關稅率 20%를 超過하는 出口과 徒量稅品目을 除外한 品目

② 欄存 延支給對象品目으로 商工部長官이 정한 品目

③ 主務部長官이 確認한 農業 및 그 原料와 医藥品原料

對内外資金調達コスト比較

(单位： %)

	1978	1979	1980	1981	1982. 2末	
A. 対内資金調達コスト ¹⁾	18.50	18.50	22.78	19.26	15.50	
B.. 対外 資金調達 cost	1. B/A rate (3個月) ²⁾ 2. Spread ³⁾ 3. 換率上昇率(前年末比) (1+2)×3	8.23 1.00 — 9.23	10.97 1.00 — 11.97	12.83 1.00 13.78 ⁴⁾ 29.52	14.90 1.00 6.15 23.03	13.60 1.00 1.64 —
金 利 差(A-B)	9.27	6.53	△6.74	△3.77	—	

註 1) 商業어 음割引率(年間平均, 優良業体基準)

2) 每月末平均 3) 1%假定 4) 80. 1. 12対比

調達コスト가 대외신용코스트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전스輸入등 延支給方式에 의한 輸入을 抱함으로써 物品輸入에 따른 資金コスト를 最小化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외신용코스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표면상의 信用供与金利 외에 換率變動에 따른 資金負担도勘査되어야 하는 바, 換率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上昇幅만큼 코스트는 높아지게 된다.

A; 国内資金調達コスト = 国内金利 + 其他附帶費用

B; 海外信用コスト = (国際金利 + spread + 其他附帶費用) × 換率變動率

A < B : 国内信用 選好

A > B : 海外信用 選好

過去 우리나라에는 民間신용한도管理方式에 의한 金融緊縮政策을 지속해 옴에 따라 国内資金調達이 어려웠고, 또한 国内金利에 비해 월등히 높은 水準을 持続하여 国内資金調達コスト가 매우 높았던 반면, 国際金利는 비교적 低水準에서 安定勢를 보였고, 換率이 長期間 安定되어 있었으므로 換리스크도 排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전스等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選好現象이 강력히 일어났다.

그러나 第2次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抑制를 위한 美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高金利政策으로 79年下半期以後 国際金利가 上昇勢를 지속하였다. 한편 対内的으로는 80年初에 換率引上과 換率流動화를 실시함으로써 환율상승으로 인한 資金負担까지 加重되어 对外資金調達코스

트가 급격히 상승하여 国内資金調達コスト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81年 延支給輸入은 80年 水準에 머물렀다.

向後 전망을 보면, 国内金利의 잇따른 引下措置로 对内外資金調達コスト의 差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今年初에 国内通貨管理方式을 종전의 民間信用限度管理方式에 의한 直接規制方式에서 傳統的인 間接規制方式으로 転換함에 따라 国内資金調達条件도 다소 好転될 것으로 보이는 등 유전스를 비롯한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選好度를 다소 低下시킬 요인이 있는 반면, 지난 2月 政府가 延支給輸入對象品目拡大 및 輸入担保金 積立免除등 일련의 延支給輸入規制 緩和措置를 取한 바 있어 延支給輸入을 增加시킬 요인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한편 国際高金利現象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不確実한 상태다. 国際高金利를先導했던 美国의 主要金利가 昨年 4/4分期 이후 下落勢를 보이고 있고 「달러」貨도 弱勢를 示顯함에 따라 自國通貨價值의 安定을 목적으로 高金利政策을 견지해온 餘他 先進国들이 景氣浮揚을 위해 金利를 引下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收束을 위한 선진각국의 基調의 緊縮持続으로 말미암아 過去와 같은 低水準으로 돌아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OECD는 앞으로 国際金利는 景氣沈滯등으로 당분간 下落勢를 보이다가 景氣回復에 따른 資金需要増大로 今年 中盤부터 反騰勢를 보여 前年과 같은 記録의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자리숫자의 高水準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NIESR 역시 国際金利는 당분

(单位 : 百万「달러」)

主要品目別 延支輸入実績推移

(決済基準)

	1978				1979				1980			
	총 수 입 수	연 지 금 액	연 지 금 액 수입비중	구성비	총 수 입 수	연 지 금 액	연 지 금 액 수입비중	구성비	총 수 입 수	연 지 금 액	연 지 금 액 수입비중	구성비
原 油	2,030.0	1,969.8	97.0	54.2	3,175.4	3,021.7	98.3	43.8	6,000.1	4,628.3	77.1	45.7
原 繸	374.4	264.0	70.5	7.3	425.2	413.0	97.1	6.0	624.3	608.0	97.4	6.0
原 木	585.0	108.0	18.5	3.0	936.8	509.2	54.4	7.4	807.1	627.9	77.8	6.2
原 石	94.9	15.1	15.9	0.4	254.6	131.1	51.5	1.9	402.2	274.2	68.2	2.7
鐵 鉱	542.5	154.4	28.5	4.2	582.6	240.2	41.2	3.5	584.7	302.1	51.7	3.0
古 肥	177.0	50.5	28.5	1.4	214.1	94.3	44.0	1.4	271.2	236.2	87.1	2.3
料 料	66.5	21.1	31.7	0.6	88.9	40.0	45.0	0.6	111.8	92.5	82.7	0.9
飼 賿	112.0	5.4	4.8	0.1	176.5	104.3	59.1	1.5	213.1	173.2	81.3	1.7
自 動 車 部 品	355.0	87.8	24.7	2.4	304.6	132.4	43.5	1.9	211.3	120.6	57.1	1.2
糧 穀	349.0	319.7	91.6	8.8	754.5	618.5	82.0	9.0	900.2	681.4	75.7	6.7
小 計	4,686.6	2,995.8	63.9	82.4	6,913.2	5,304.7	76.7	77.0	10,126.0	7,744.4	76.5	76.6
總 計	12,433.5	3,635.9	29.2	100.0	16,869.2	6,893.4	40.9	100.0	19,170.4	10,116.7	52.8	100.0

註 1) 연지금수입비중 (%) = 연지금수입 / 총수입

2) 구성비 (%) = 당해품목 연지금수입 / 총연지금수입

主要機関 金利展望

(年利 %)

		80·4/4	82·1/4	82·2/4	82·3/4	82·4/4	81년	82년
D R I ¹⁾	美国 Prime rate ³⁾	17.33	15.44	17.61	18.40	17.62	18.95	17.27
	「유로·달러」金利 ³⁾	15.36	14.79	16.69	17.11	15.92	17.05	16.13
W E F A ²⁾	「유로·달러」金利 ⁴⁾	13.24	11.76	10.98	10.66	10.60	13.24	10.60

資料：1) DRI, Review of the U.S. Economy 1981. 11月号

2) WEFA, Exchange rate Outlook 1981. 11月号

3) 期間平均

4) 期末基準

간 「인플레이션」率을 上廻하는 높은 實質金利水準을 지속하고 83~84年以後에나 10%以下로 下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主要經濟予測機関들이 最近의 金利下落趨勢가 2/4分期를 고비로 反騰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어 國際高金利의 대폭 완화는 期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같이 國際金利展望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国

內金利가 비교적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어 유전스 등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選好度는 다소 低下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國内物價安定에 力点을 둔 정부의 通貨政策등에 비추어 國内資金調達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一定水準의 延支給輸入은 不可避할 것으로 예상된다. *

□ 海外短信 □

英國, 北海產 油價 引下 — OPEC에 큰 影響 미칠듯

지난 2月8日 北海產 原油價格을 배 텔당 1.5弗씩 引下시킨바 있는 英國의 国營石油会社인 BNOC는 2日 또다시 3月1日부터 6月末 까지 北海產油價를 배 텔당 4弗씩 條件附로 追加 引下할것을 提議하고 BP, Shell等 輸入商들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英國의 北海產 原油價는 今年들어 두번에 걸쳐 總 5.5弗이 떨어지게 되었다.

BNOC가 이번에 追加로 가격을 引下시키면서 부과시킨 條件은 비록 引下価格의 發効日字가 3月1日이고 每分期末에 価格를 再調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2/4分期末인 6月末까지는 石油市場에 特別한 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한

価格를凍結시킨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며 두번째는前述한 特別한 事態의 基準을 明示한 것으로 現在 34弗로 되어있는 OPEC基準油價가 4弗以内로 떨어지거나 北海產과 油質이 거의 같은 아프리카產 油價가 5弗以内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를 特別한 事態로 보지 않는다고 規定한 것이다.

BNOC의 이같은措置는 不遠間 OPEC 基準油價가 最高 4弗까지 떨어질 것이라는豫想을 분명히 한 것으로 業界에서는 OPEC이 臨時總會召集을 앞두고 모종의 決定을 굳하게 만들 과감한 시도라고 이를 환영하였다.